

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2025년 3월 17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48 호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휴직 신청 당시 임신중인 여성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직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

제4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사장은 직원이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 영 기 획 실
입 안 자	직 위 성 명	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
	직 위 성 명	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
	담당자 성명 (전 화)	김 재 덕 (3 9 0 - 7 6 0 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휴직) ② (생략) 2. 휴직 신청 당시 임신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u>만8세</u>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 하기 위하여 휴직(이하“육아휴직” 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	제40조(휴직) ② (현행과같음) 2. ----- -----<u>직원이 만8세</u> ----- ----- ----- -----
제40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사장은 직원이 <u>만8세 이하 또는</u> <u>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u>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u>만12세 이하 또는</u> <u>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u>----- ----- ----- ----- ----- ----- ----- ----- ----- -----.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